

2012. 7. 9 Vol. 28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
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

거시경제 동향

201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

기획 정보

우리나라의 ODA 추진 실적

농정 여론 동향

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
·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및 병해충 현황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한·EU FTA 발효 1년, 주요 농식품 수출입 동향 분석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농정 이슈_1

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

※ 본 자료는 7월 2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쌀직불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가 소득보전 효과 제고 기대」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개정필요성

-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시 적용되는 **ha당 쌀 생산량을 현실화**하고, **목표가격 산정 기준을 법률과 일치**시킬 필요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- 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**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**(단위 생산량)이 현행 61가마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**5년 단위로 재산정**하여 고시하도록 변경(시행령 제7조제3항)

※ (현행)61가마 고정 → (개정)5년 주기로 재산정[63가마]

- 변경 단위생산량의 산출값은 직전 5개년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(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평균)값과 그 이전 5개년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과의 변동비율을 직전 단위생산량에 곱하여 산출

$$\begin{array}{lcl} \text{변경 단위} & & \\ \text{생산량} & = & \frac{\text{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}}{\text{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}} \times \frac{\text{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}}{\text{단위생산량}} \end{array}$$

- **쌀 목표가격 산출시 수확기 쌀값 산출기준을 매 5년 단위로 변경**(법과의 일치)토록하고 변동비율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(시행령 제6조 제1항)

※ (현행)3개년도 산술평균값 변동비율 → (개정)5개년도 절단평균값 변동비율

- 변경안 산출 직전 5개년도 수확기 쌀값을 절단평균한 값과 그 이전 5개년도 수확기 쌀값을 절단평균한 값간의 변동비율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하여 산출

$$\text{변경 목표가격} = \frac{\text{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}}{\text{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}} \times \text{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}$$

〈참고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개념

□ 지원방식

○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%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

- 직접지불금(고정직접지불금 + 변동직접지불금) 지급액
 - (목표가격 -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) × 85%
- 고정직접지불금(쌀값과 관계없이 지급)
 - '98-'00년 기간 동안 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 '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
- 변동직접지불금(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)
 -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%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1ha당 61가마(쌀 80kg)를 기준 하여 지급

□ 직불금 지급대상

○ 지급대상 농지

-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 재배)에 이용된 농지(농지법에 의한 농지)

○ 지급대상자

-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포함)

※ 본 자료는 7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식품부,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에 팔 걷고 나서」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

- 농어촌 정주여건 정비가 시급하나 지금까지 **마을 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**되어 사업의 효과가 제약
 - **마을(지구)단위로 기반시설 확충, 빈집정비, 주택개량 등을 패키지 지원**함으로써 사업효과 제고 필요
 - ※ 읍부의 인구는 2005년 392만명에서 2010년 약 415만명으로 약간 증가
 - ※ 면부의 인구는 2005년 약 478만명에서 2010년 약 448만명으로 약간 감소
 - ※ 2002년부터 귀농 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0,503호로 피크
- **주민 능력, 주택 상태, 마을 인구 변화 등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필요**
 -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농어촌 주민의 자부담으로 개량하는데 한계
 -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시급
 - 독거노인, 다문화가정, 영유아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

□ 사업 개요

- **사업기간: '13~'24년(11년간)**
 - '13~'14년 시범사업, '15~'24년 본사업
 - ※ 전국의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이 시범사업을 평가·분석하여 매년 100여개 마을에 대한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
- **총사업비: 총 3조 9.6천억 원**(보조 30,683, 융자 9,847), **1,000개 마을**
 - 마을당(50호 기준) 39억 원(보조 29, 융자 10)

○ 지원대상: 마을 전체에서 노후·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고,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인 마을 공동개발을 동의한 마을

○ 지원내용: 기반시설정비는 보조, 개별건축비용은 용자 지원

- 기반 시설 정비 슬레이트 철거, 공동생활형홈 조성, 영유아보육시설, 에너지 효율화사업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원
- 개별 주택건축비는 주택개량사업 용자금으로 지원(5천만 원 한도)

○ 추진체계(역할)

- 농식품부: 기본계획 수립 및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
- 지자체: 마을별(지구) 사업계획 수립, 지방비 부담금 확보 등
- 한국농어촌공사: 사업 총괄 지원 및 사업시행 등
- 지역주민: 주택 개량 및 공동 생활형홈에 대한 입주자 선정 등

거시경제 동향

201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

※ 본 자료는 7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전반적 동향

- **201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**는 106.1(2010년=100)로 **전년 동월대비 2.2% 상승**(전월대비 0.1% 하락)

-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과 통신부문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4.4%, 3.4% 하락하였으나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부문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

<연도별 6월 및 최근의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(2010=100, %)>

구분	연도별 6월 동향					최근의 월별 동향						
	2008	2009	2010	2011	2012	2011.12	2012.1	2	3	4	5	6
지 수	95.1	97.0	99.6	103.8	106.1	105.2	105.7	106.1	106.0	106.0	106.2	106.1
전 월 비	0.6	-0.1	-0.1	0.2	-0.1	0.4	0.5	0.4	-0.1	0.0	0.2	-0.1
전년동월비	5.5	2.0	2.7	4.2	2.2	4.2	3.4	3.1	2.6	2.5	2.5	2.2
전년동기비	4.3	3.3	2.8	3.9	2.7	4.0	3.4	3.2	3.0	2.9	2.8	2.7

- **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** 및 **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**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.5%(전월대비 0.3% 상승), 1.4%(전월대비 0.1% 상승) 상승
- **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.8% 상승**(전월대비 0.3% 하락)
 - 식품은 전년 동월대비 2.9% 상승(전월대비 0.2% 하락)
 - 식품이외는 전년 동월대비 1.4% 상승(전월대비 0.3% 하락)
- **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1.0% 상승**(전월대비 5.0% 하락)
 - 신선어개는 전년 동월대비 3.9% 상승(전월대비 1.9% 하락)
 - **신선채소는 전년 동월대비 19.8% 상승**(전월대비 9.5% 하락)
 - **신선과실은 전년 동월대비 11.0% 상승**(전월대비 3.5% 하락)
 - 기타신선식품은 전년 동월대비 4.9% 하락(전월대비 1.6% 하락)

□ 농축수산물 물가동향

○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5.8% 상승(전월대비 1.0% 하락)

- 농산물: 전년 동월대비 14.4% 상승(전월대비 4.3% 하락)
- 축산물: 전년 동월대비 8.2% 하락(전월대비 7.1% 상승)
- 수산물: 전년 동월대비 4.2% 상승(전월대비 1.2% 하락)

<품목성질별 동향(2010=100, %)>

구분	품목수	가중치	2011. 6월				2012. 6월			
		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6월)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6월)
총지수	481	1000.0	103.8	0.2	4.2	3.9	106.1	-0.1	2.2	2.7
농축수산물	71	77.6	105.7	0.6	10.7	12.6	111.8	-1.0	5.8	4.0
농산물	51	43.5	100.0	-1.7	8.7	13.9	114.4	-4.3	14.4	10.2
축산물	6	22.1	116.1	5.6	16.1	11.9	106.6	7.1	-8.2	-7.5
수산물	14	12.0	107.4	-1.5	7.7	9.2	111.9	-1.2	4.2	3.2

<6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>

단위: %

구분	전월대비	전년 동월대비
상승 품목	돼지고기(17.6), 파(39.1), 고구마(4.9)	고춧가루(72.5), 파(84.7), 쌀(8.2), 배추(65.9), 고구마(41.5), 감자(55.6)
하락 품목	배추(-30.9), 참외(-28.9), 오이(-33.6), 수박(-15.0), 브로콜리(-35.7), 토마토(-22.1), 호박(-19.7)	돼지고기(-16.1), 달걀(-9.5), 호박(-32.0), 명태(-15.0), 참외(-10.3)

※ 본 자료는 국내외 ODA관련 사이트 및 문헌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□ ODA 공여국으로서의 한국: 최빈 개발국에서 원조공여 선진국으로

- (원조성과) OECD 개발원조위원회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, DAC)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*('09.12)
 - 1961년 DAC가 발족한 이래 원조수혜국 중 **최빈개발국 지위에서 원조공여 선진국 지위로 올라선 최초** 사례
 - ※ **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 조건으로 2015년까지 GNI대비 ODA 총량을 0.25% 달성** 요구
- (지원근거 및 추진체계)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('05)하고 2010년 제정된 **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,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, 5개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, 연간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이 주 골격**
- (중점지원분야) 교육(인적 자원), 보건, 행정(ICT, 경제), 농업, 산업에너지(국토개발) 및 환경(녹색성장)과 여성 등 범 분야 이슈
 - ※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: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

□ 한국 ODA 총량의 확대추세: 원조규모 및 구성

- (원조규모) '00~'11년까지 총 원조 규모는 약 75억불 상당이며,
 - '00년 2.1억불 → '11년 13.2억불로 약 6.2배 증가**
 - 양자원조: 총 54억불 규모로 '00년 1.3억불 → '11년 9.7억불로 증가
(유상 21억불, 무상 33억불 차지)
 - 다자원조: 총 22억불 규모, '00년 0.8억불 → '11년 3.5억불

<한국의 연도별 원조규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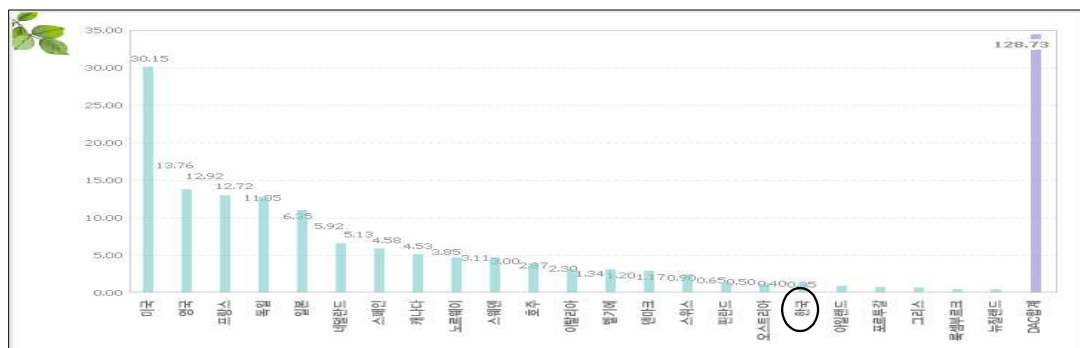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USD, %

구 분	2000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총ODA(A+B)	212.1	752.3	455.3	696.1	802.3	816	1,174	1,321
양자원조(A=a+b)	131.2	463.3	376.1	490.5	539.2	581.1	901	970
무상원조(a)	47.8	318	259	358.3	368.7	367	574	558
유상원조(b)	83.4	145.3	117.1	132.2	170.6	214.1	327	412
다자간원조(B)	80.9	289	79.2	205.6	263.1	234.9	273	351
ODA/GNI(%)	0.04	0.1	0.05	0.07	0.09	0.1	0.12	0.12

자료: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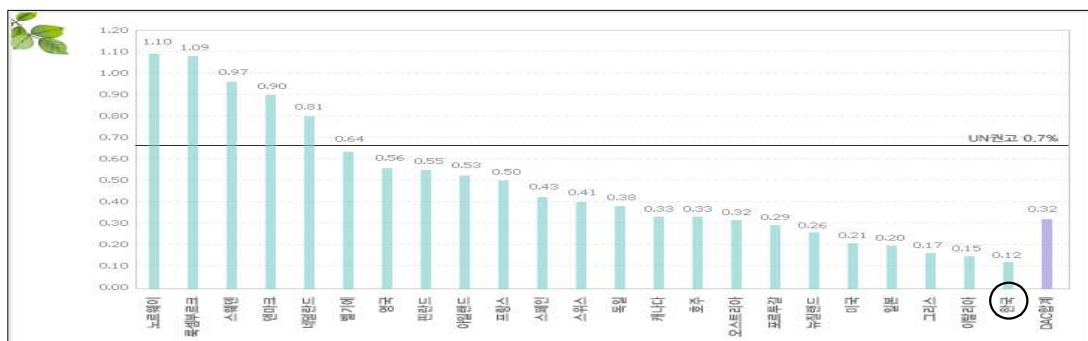
- (국제비교)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(ODA/GNI)이 2011년을 기준으로 0.12%에 머물러 세계 13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
 - DAC 회원국의 평균 ODA/GNI 비율인 0.32% 및 UN 2015년 목표치 0.7%에 못 미치는 수준(2015년까지 0.25% 목표)

<2011년 DAC회원국 순 ODA 총액 (순지출 기준, USD 10억)>



자료: OECD

<2011년 DAC회원국 ODA 규모 (GNI 대비 %)>



□ 농림수산분야 ODA 연방

1. 목적 및 사업

- (추진목적) 수원국의 식량문제 등 농업·농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업의 해외진출 등 자원의교를 측면지원
- (추진사업) 중점 협력대상국 선별을 통한 농림수산분야 국별지원
 - 물적(인프라 건설)·인적(전문가 파견, 초청연구 등)지원을 패키지로 하여 중점협력대상국에 집중 지원

2. 추진 및 지원체계의 2원화

(1)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와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개발기금(EDCF) 협력사업

- KOICA, EDCF의 농어촌개발 분야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각각 총괄 담당
 - 협력형태: KOICA의 경우 프로젝트, 연수생 초청, 봉사단 파견 등이며 EDCF는 관개개발, 기자재 차관지원, 연구소 건립, 기계화 시범단지 건설 등 협력지원

(2) 농림수산분야의 협력사업

- 농식품부 본부와 농진청, 산림청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 전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시행
- 협력형태: 공동연구, 국제회의, 워크숍, 전문가 컨설팅, 초청연수 등을 통한 기술지원과 약간의 물자지원으로 구성
- (대외무상원조 실적)
 - '2010년 기준 농어촌개발 분야는 463억으로 전체(총 5,247억) 대비 8.8% 기록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가입을 계기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농업국제협력예산도 대폭 증가 예정
 - '11년 국제농업협력예산 137% 증가: ('10) 42억 원 → ('11)100

3. 농림수산 분야 ODA의 문제점

- (시스템 측면) 농식품부와 농진청, 산림청이 개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
 - 수원국 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, 농림수산 분야 ODA전문가 풀 및 사업 품질관리 체계구축 미흡
- (업무·기능 측면) 국가차원의 통합전략 없이 유무상 및 개별부처로 ODA 사업의 추진체계 다원화
 - 대외적으로 무상원조 시행기관 과다에 따른 사업분절화·중복 문제를 OECD DAC 및 정부·학계·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
 -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은 KOICA 사업과 내용·형식면에서 유사
- (효율성 측면)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, 아직까지는 ODA 규모, 추진체제,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한 것으로 평가
 - ODA 규모가 OECD 23개 회원국 중 19위로서 우리의 경제규모 및 국가위상에 비추어 낮은 수준('09년 기준)
 - 높은 구축성 비율, 사업의 분절화와 파편화 등으로 인해 원조 효과성도 낮은 상황

자료출처: www.oecd.org/dac
www.odakorea.go.kr

□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시스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경오염

- 농촌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용 봉지에 담아 버리는 비율 5% 미만으로 추정
- 폐자재 수거함 부족해 소각,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수거하지 않아 하천에 버리기도
→ 쓰레기 수거함 확대 설치, 정기적인 수거, 주민 교육 등 실시돼야

- 농촌지역의 폐비닐, 농약병 또는 농약봉지, 사료포대 등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농촌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음. **생활쓰레기의 경우는 수거용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는 비율이 5% 미만으로 추정**됨. 이에 마을별 쓰레기처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함.<김은규, 전남 강진>
- 마늘과 양파 수확 후 나온 **비닐과 온갖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냄새가 연일 끊이지 않고** 있음. 타동네에 수거함이 있지만 10km가 넘는 곳이다 보니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. 마을 단위로 쓰레기 수거 대책이 필요함.<김영국, 대구 수성>
- 농촌지역 마을은 **쓰레기 수거 차량이 제때 오지 않고 드물게 수거해 가는 편**임. 농촌마을에도 쓰레기 수거차량이 수시로 순회해야 한다고 생각됨.<김용덕, 경기 남양주>
- 농촌 쓰레기 문제 중 폐비닐과 농약병은 부녀회에서 수거 봉사활동을 통해 기금도 마련하는 등 환경도 살리고 부녀회원들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.<김수정, 제주 제주시>
- 농촌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나무, 잎 등을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임. 분리수거 또한 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방치되는 형편임. **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수거하지 않아 자연하천** 또는 아무 곳이나 버려지는 실정임.<방호정, 경남 하동>
-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는 **단위마을로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분리수거할 수**

있게 해야함. 농촌도 환경이 중요하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함.
<김병철, 경남 김해>

- 농촌지역은 쓰레기 소각도 안되고 쓰레기 차량도 비용 문제로 제때 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음. 쓰레기 **수거함 설치 비용보다는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**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임. <문성근, 경남 진주>
- 폐비닐과 농약병 수집소가 없는 마을은 이웃마을까지 가서 버리고 오는 실정임. 이에 **부족한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집소를 더 늘려주었으면 함.**<심광섭, 충북 충주>

□ 이상 기후로 병해충 증가·부산, 강릉지역에서는 냉해 우려

-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신종 병해충 증가, 사과 복숭아 갈색여치 피해 호소
- 부산과 강릉지역에서는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냉해피해 우려 여론

-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더욱더 힘든 것은 **신종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음.**<장석우, 충남 청양>
- 화순에도 **고추와 벼에 병충해가 심하며**, 벼에는 물바구니와 노린제 피해, 고추에는 진딧물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한 편임.<나종주, 전남 화순>
-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에 갈색 여치 피해가 많음. 작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피해인데 올해 갑자기 **갈색여치 피해가 많아 복숭아와 사과를 값아 먹고 있음.**<박종임, 충북 괴산>
- 계속되는 가뭄으로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는데 **친환경 농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면서 일주일에 1회 살포하던 것을 2~3일에 한번씩 살포**를 해도 약효가 없는 상황이라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.<김용덕, 경기 남양주>
- 부산 기장은 비가 가끔씩 내려 다른 지역보다는 물 부족은 큰 걱정이 없는 상황임. 하지만 문제는 저온현상임. **기온이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고 25도 내외로 머물고 있어 농작물 냉해 등의 피해가 우려됨.**<최시훈, 부산 기장>

- 강릉지역은 6월 들어 거의 햇빛을 볼 수 없었음. 비가 오거나 비가 안오면 안개가 끼어 한낮의 온도가 18도를 넘지 못함. **강원도 강릉은 가뭄 걱정이 아니고 냉해를 우려하고 있음. 밭작물들이 엽채류를 빼고 성장을 멈춘 상태임.**<송인숙, 강원 강릉>

□ 가뭄 피해 근본적인 대책 촉구·밭에 수리시설 설치, 관정개발 여론

- 계속된 가뭄에 논농사보다 밭농사와 과수농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여론임
- 밭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, 관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며
→ 지하수 개발과 대형관정 보급, 산골짜기 보 설치, 저수지 건설 등 대책 요구

- 밭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, 관정 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조금만 비가 안 와도 타격이 큰 편임. 지금은 논보다 밭작물이 더 농가소득이 많으므로 **밭에도 수리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기 바람.**<전재경, 경북 의성>
- 하동의 경우 논농사는 가뭄피해가 적은 반면 **밭작물은 물이 모자라 피해가 많은 실정**임. 특히 매실의 경우는 그 피해가 많음. 지하수 개발 등이 필요함. <방호정, 경남 하동>
-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 채소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곳은 지하수가 부족해 물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, **한창 수확중인 마늘과 감자는 성숙기에 물이 부족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줄었음.**<심광섭, 충북 충주>
- 가뭄으로 과수의 **과실 세포분열기부터 수분 부족으로 생육에 영향**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실비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. 밭작물도 정식과 파종이 곤란하고 생육이 저조한 상태이며 일교차가 커 가뭄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.<김인남, 경북 상주>
- 중산간 지역은 평상시에도 물대기가 만만치 않음. 특히 요즘은 이틀에 한번 씩 격일양수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음. 과거에 파놓은 소형관정은 물이 안 나오니 **대형 관정을 보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뭄대책이 절실함.**<남도성, 충남 당진>

- 정부는 금년과 같은 가뭄을 대비하여 **지하수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뭄대책을 심도있게 추진**해야 할 것임.<이윤현, 경기 화성>
-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가뭄이 더 극심해 양수나 관수를 하려해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관정을 더 깊이 파야하니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실정임. **산골짜기부터 작은 개울까지 크고 작은 보를 군데군데 많이 설치**해 물을 가두게 되면 산골짜기까지도 골고루 물을 담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됨.<임충빈, 경기 안성>
- 가뭄이 들때마다 양수기나 지원해주는 대책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**지역에 따라 빗물 저수지나 그렇지 못한 곳은 관정을 설치**해 항구적인 수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.<김종근, 전남 순천>
-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가뭄이나 홍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. **긴 가뭄을 대비해 저수지를 건설하여 물을 확보하고 물 부족에 대비**하는 지혜가 필요함.<김민호, 경기 이천>

※ 본 자료는 7월 2일~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·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국제곡물가격(콩, 옥수수) 급등

- 미국 곡창지대를 강타한 이상고온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였고 일각에서는 '07~'08년 애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함. 이는 미국이 옥수수·콩·밀의 최대생산국으로 생산량의 변동이 세계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. 7월 2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(CBOT), 옥수수 12월 인도분은 부셸(약 27.2kg)당 6.55달러로 마감. 이는 '11 9월 이후 최고치로 옥수수가격은 최근 보름 동안 30% 상승. 콩 11월 인도분은 부셸당 15.42달러로서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콩가격은 한 달 새 20% 상승. 미 농무부(USDA), '12년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량의 상급비율을 48%, 45%로 8%포인트 하향조정.



자료 : 매일경제, 동아일보, 아시아경제, 문화일보, 파이낸셜 뉴스(2012.7.5).

□ 양파 의무수입량 관세인하...수입량도 11만t으로 늘려

- 농림수산식품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양파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함. 양파 생산량이 극심한 가뭄피해로 인해 '13년 수확기까지 16만 4,000t이 부족할 전망에 따라 '12년 양파

의무수입물량을 저율할당관세(10%)로 전환,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대폭 확대. '13년 양과 의무수입물량에 대해서도 '13년 4월까지 조기 도입해 부족량을 충당할 방침임. 그러나 생산지는 가뭄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입확대 조치에 따른 가격인상 억제로 소득이 저하되는 이중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.

자료 : 농민신문(2012.7.2).

□ 축산물 이력제·원산지 표시제 대폭 강화

-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 축산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**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를 대폭 강화**하기로 함. 이를 위해 '12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, 쇠고기 이력제도상 현재 수입쇠고기에 한해 **대형 유통업소에 적용중인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** 대상을 **2015년까지 국내산·수입산 쇠고기의 80%까지 시행**. 축산물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재래시장,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**상시 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, **축산식품 문제 발생 시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가동**. 또한 '13년부터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임.

자료 : 축산신문(2012.7.2).

□ 원자재원율 상승 영향, 비료값 5.9% 올라

- 농협은 **환율 및 요소 국제가격 상승**으로 24.6%의 비료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7월 6일부터 **일반비료 23종과 맞춤형 비료 30종**의 농협 구매가격을 평균 8.6% 인상하되, **농업인 판매가격**은 재고를 감안해 **5.9% 인상**(20kg 1포대 기준 비료값: 평균 **1만 2,542원 → 1만 3,281원**, 739원 상승)··▲(농협 관계자) 비료 성수기인 6월 말까지 올해 화학비료 공급계획물량 94만t 가운데 67%인 63만 1,000t을 공급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"며 "앞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기면 판매가격을 내리는 한편 맞춤형 비료 사용으로 적정시비량 및 농업경영비가 절감되도록 그 세부내용을 농가에 적극 알릴 방침

자료 : 농민신문(2012.7.6).

□ 학교급식 업체관리 엄격해진다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는 학교급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.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중 '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'에 부합하면 됨. 그러나 **관련법만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**가 있음. 이에 aT는 정부기관·교육청·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, 법적 기준 이외에 **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할 계획**임.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단속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, 부적격 급식업체를 적시에 제재하고 농산물명예감시원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aT가 직접 입점심사나 합동 점검 시 위생단속에 관여할 방침.

자료 : 원예산업신문(2012.7.2).

□ 농지수용 보상금, 작물 평균소득의 1.5배로 제한

- 국토해양부는 영농손실보상금 상한제를 담은 '**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**'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음. ▲(이유) 농지손실보상금에 관한 현행법령에서는 농가가 제시한 소득자료를 통해 2년치의 소득을 보상해 주다 보니 규정을 악용해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 발생. 개정안 내용에 따라 **택지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될 때** 해당 농가의 소득 입증자료가 농촌진흥청의 '농축산물소득자료집'의 **작물별 평균소득을 초과 시 영농손실보상금은 평균소득의 1.5배까지로 제한**. ▲(영향)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 규정을 **적용할 시 대상 농가의 8%는 보상금 감소**. 이에 따라 뛰어난 기술력으로 소득이 월등히 높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보상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됨.

자료 : 농민신문(2012.7.2).

□ 농업·농촌 올대 인상 줄 내년 농식품 예산요구액

- 농림수산물식품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 등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3년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.8% 줄어
 -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6.5% 증가했는데 농림수산물식품 예산 요구액이 감소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
 - ※ 2013년 농림수산물식품 예산 요구안은 17조 3,0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약 9,000억 원 감소
-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요구안 중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보완대책 및 식품산업 투자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저수지 독 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1조 3,000억 원 줄었다고 설명
- 이는 4대강 사업 종료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해명인데, 농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움.
 - 그동안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일부를 기존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에서 부문별로 축소해 조달
 - ※ 2011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관련 31개 사업 예산이 2010년 대비 총 8,580억 원 감소
 - 수리시설 개·보수, 배수 개선, 다목적 용수개발, 농촌용수 이용개편, 농지 규모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 4대강 사업 예산으로 투입
- 이러한 농업·농촌 부문 예산 편성 방식으로 차기년도 핵심 농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차질 불가피

자료: 농민신문 사설(2012.7.6)

※ 본 자료는 7월 2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「한·EU FTA 발효 1년 : 주요 농식품 수출입 동향 분석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□ EU산 농수산물식품 수입 동향 분석

1. 수입동향

- 한·EU FTA 발효 이후 '12년 5월 31일까지 EU 농수산물식품 수입은 전년 동기('10.7.1~'11.5.31) 대비 24% 증가(2,121백만\$ → 2,630백만\$)
- EU의 경쟁력이 높거나(냉동삼겹, 치즈 등) 관세 혜택이 큰 품목(감자전분, 포도주, 포도주스 등), 투입재(종자용 완두, 백합 구근 등)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
 - ※ 냉동삼겹살(241백만\$ → 435백만\$, 80.4% ↑), 치즈(47백만\$ → 62백만\$, 34.2% ↑)
 - ※ 감자전분(29백만\$ → 38백만\$, 30.4% ↑), 포도주(63백만\$ → 76백만\$, 19.9% ↑), 포도주스(1.7백만\$ → 3.2백만\$, 87.9% ↑)
 - ※ 종자용 완두(7천\$ → 53천\$, 657% ↑), 백합 구근(5백만\$ → 5.8백만\$, 15.2% ↑)

2. 국내 영향

-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, 한·EU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
- 수입액 상승은 주요 수입 품목(돼지고기 등)의 수입 단가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
 - 실제, 수입액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('10.7~'11.5) 대비 12% 감소(1,581천톤 → 1,385천톤)
 - 돼지고기 수입 단가 상승에는 국내 여건(구제역 발생)에 따른 긴급 수입

증가(할당관세 0%)의 영향이 크게 작용

※ 냉동삼겹살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('10.7~'11.5) 대비 45.8% 증가(72천톤 → 106천톤) 하였음에도 수입액은 80.4% 증가

○ 한·EU FTA **민감 품목인 축산물의 경우** FTA 발효 이후에도 **국내산 돼지고기, 닭고기 등의 도매가격은 큰 변동 없이** 유지

- 이는 **시장 차별화 등의 요인**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가 **타 국가산 수입 증가를 억제**하였기 때문으로 분석

○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인 관세 혜택이 큰 품목(감자 전분, 포도주, 포도 주스)과 투입재(종자용 완두, 백합 구근) 등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

3. 분야별 · 품목별 영향

○ (**축산물**) EU산 경쟁력이 높은 **돼지고기, 낙농품**(치즈 등) 등의 경우 대체로 **수입 증가**

- (**돼지고기**) 냉동 삼겹살, 냉동 기타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, 이는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'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수입할당관세 적용 효과가 더 컸기 때문

- (**낙농품**)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, 특히 **관세율할당물량 (TRQ) 제공 등의 영향으로 탈지·전지분유의 수입 대폭 증가**

- (**닭고기**) 냉동 다리·기타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, 냉동 날개 부분은 수입 감소(단, 전반적인 수입 감소로 EU산 제품의 수입 점유율은 26.6%에서 40.8%로 상승)

- (**쇠고기**)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(농식품부 고시)에 의거 수입 불가

○ (**신선과일**) 「식물방역법」상 수입금지 품목인 **사과·배 등의 수입은 없으며, 오렌지 수입은 감소**(330천\$ → 260천\$, 21.2% ↓)

- 이는 한·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과의 경쟁 때문으로 추정

- (종자/사료/가공원료) 완두, 백합구근, 사료용제조품, 감자전분 등 관세 혜택 품목 다수가 수입 증가
 - 대부분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로 주로 투입재로 사용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
- (기타) 위스키(관세감축폭 3.3~5%p), 포도주(15%p) 등 관세 혜택 품목들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, 수입 점유율 역시 상승

□ 대 EU 농수산물식품 수출 동향 분석

- 한·EU FTA 발효 이후 '12년 5월 31일까지 대 EU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6% 증가(333백만\$ → 353백만\$)
- FTA 관세 혜택 품목(라면, 음료, 커피조제품 등)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견인
 - ※ 라면(관세 즉시 철폐, 9.5백만\$ → 12.1백만\$, 27.4% ↑), 음료(관세 즉시 철폐, 4.5백만\$ → 8.4백만\$, 86.7% ↑), 커피조제품(관세 즉시 철폐, 2.7백만\$ → 4.8백만\$, 77.8% ↑)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